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2022-4호  
**D.gov**

**해외동향** **법·제도**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CONTENTS

1

EU - 법 집행 분야에서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_ 3

2

EU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규칙 채택 \_ 8

3

EU - 고(高)가치 데이터셋 이행규정과 부록 내용 마련 \_ 15

4

독일 바이에른 주(州) - 「디지털법」 제정 \_ 20

---

「D.gov 해외동향 법제도」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해외 법제도 분석을 통해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기획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제안은 아래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 행 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작 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부본부 디지털정부기획팀  
- 김희진 주임(alice@nia.or.kr)
- 기 획: 오강탁 디지털정부본부장, 박선주 디지털정부기획팀장
-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www.nia.or.kr](http://www.nia.or.kr), [egov.nia.or.kr](http://egov.nia.or.kr)

# 1

## EU 집행위원회, 법 집행 분야에서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I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공공 분야(실종자 수색 등)에서 급증하는 안면인식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법 집행에서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을 채택(22.5.22.)<sup>1)</sup>
  - \* Guidelines 05/2022 on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the area of law enforcement
  - EU 전역에서 개인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안면인식 정보의 오·남용에 대항하여 EU 시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여론 부상
  - 또한 법을 집행하는 일선 업무담당자들은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부담을 느끼고, 업무에 참고할 만한 실용적인 지침을 요구

#### < 참고 : 안면인식 기술의 개념과 활용 범위 >

개념	생체 인식 데이터*의 일종인 안면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개인을 인증·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 *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지문, 홍채, 음성, 보행, 혈관 등)을 정량화 하여 개인을 인식하는 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이미지 정보
적용단계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하고, 템플릿으로 변환한 다음 해당 템플릿을 다른 템플릿과 비교하여 얼굴을 인식하는 두 단계를 거침
기능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증의 기능과 특정 영역이나 이미지 DB에서 사람을 찾는 식별
범위	단순히 스마트 카메라로 얼굴을 감지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일반 카메라를 통해서 다수의 시스템과 연결되는 것까지 포함

출처 : IT dongA, “[IT강의실] 내얼굴이 곧 열쇠- 얼굴인식”, 2021.8.22. 재구성

1) [https://edpb.europa.eu/our-work-tools/documents/public-consultations/2022/guidelines-052022-use-facial-recognition\\_en](https://edpb.europa.eu/our-work-tools/documents/public-consultations/2022/guidelines-052022-use-facial-recognition_en)

## II 주요 내용

○ 본 가이드라인은 크게 요약, 소개, 적용 가능한 기술의 특징과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부록으로 구성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에서 안면인식 정보를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EU 기본권 헌장\*, 유럽 인권협약\*\*, 개인정보 보호 규정, 기타 개별법의 내용을 서술

\* EU 기본권 헌장: 유럽연합 시민 및 거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규정한 헌장으로 선포(2000.12.7.)

\*\* 유럽 인권협약: 유럽 인권 보호 조약은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조약 (1953.9.3.)

### < 가이드라인의 요약 >

기술	기능(1.인증 2.식별)	
	목적과 응용	
	정보주체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 위험	
법적 프레임워크	일반적 적용	EU기본권 헌장의 적용 가능성
		EU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권리 제한
		제한의 정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규정</li> <li>- EU기본권헌장 제8조에 규정된 프라이버시 및 개인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본권 본질</li> <li>- 목적의 적당성</li> <li>- 필요성 및 비례성</li> <li>- 유럽 인권협약 제53조 적용</li> </ul>
	개별적 적용	법 집행 목적을 위한 특정 범주의 데이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또는 회원국 법률에 승인된 사항</li> <li>- 필요성</li> <li>- 정보주체의 명시적 공개</li> </ul>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정보주체의 범주
		정보주체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접근성 확보</li> <li>- 접근 권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수정권리</li> <li>- 삭제권</li> <li>- 제한권</li> <li>-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제한</li> <li>- 감독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li> </ul>
	기타 법적 요구 사항 및 보호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 영향평가</li> <li>- 감독당국의 사전 협의</li> <li>- 보안처리</li> <li>- 설계 및 기본적 데이터 보호</li> <li>- 로그관리</li> </ul>

○ 본 가이드라인의 부록은 ① 시나리오 설명을 위한 템플릿 ② 안면인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실제 지침 ③ 가상 시나리오 및 고려사항으로 구성

- (시나리오 설명을 위한 템플릿) 담당자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시나리오의 작성 양식과 세부 항목을 안내

### 〈 시나리오 작성 템플릿 〉

항목 구분	주요 예시
처리에 대한 설명	처리 내용, 맥락, 범죄관계, 목적
정보 출처	정보주체, 이미지 출처, 범죄와의 연결, 정보 캡처 모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기본권, 데이터 주체에 대한 추가 정보 출처
참조 데이터베이스	특이성, 법적 근거, 데이터베이스 목적 변경
연산	처리유형, 고려사항, 기술적 보호 장치
결과	직접적 영향, 자동결정, 보관기관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분석, 적용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

- (일선 업무자를 위한 실용적 지침) 업무담당자가 기성품을 조달받을 것을 상정하여 업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 시스템 구매 전 업무, 조달 중 및 시스템 사용 전 업무, 사용 후 권장 사항 등을 명시

〈 안면인식 기술 활용 프로젝트 업무별 필요사항 〉

활용시스템	주요 내용
역할과 책임	이해관계자(최고경영진, 법무부서, 프로젝트 책임자, 데이터 과학부서, 최종 사용 담당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별 역할과 책임
시스템 구매 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사례에 대한 공식 설명</li> <li>- 필요성 및 비례성 평가 수행</li> <li>-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수행</li> <li>- 정보주체에게 고지</li> </ul>
조달 중 및 시스템 사용 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고리즘 선택 기준 결정</li> <li>- 필요시 알고리즘 강화</li> <li>- 보안, 편향 위험이 낮은 장치 설정</li> <li>- 시스템 문서화</li> <li>- 기술과 사용례 설명하는 사용자 매뉴얼 작성</li> <li>- 최종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법 설명</li> <li>- 필요 시 데이터 보호 감독 기관에게 문의</li> </ul>
사용 후 권장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에 대한 개입과 감독 보장</li> <li>- 시스템의 성능저하를 모니터링하고 해결</li> <li>- 시스템 수명 주기 전반에서의 변경사항을 문서화</li> <li>- 개인의 정보 유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li> </ul>

- (가상 시나리오 및 고려사항) 시나리오별 설명과 활용되는 정보의 출처, 적용 가능한 분야, 관련 법적 근거, 안면인식 정보 활용의 당위성과 피해의 최소화성 등을 서술

〈 가상 시나리오의 예시 〉

활용시스템	주요 내용
출입국 관리 시스템	국경을 통과하는 EU 시민들은 전자여권에 저장된 안면인식 이미지를 인증하고 여권의 진본성을 확인함으로써 자동화된 국경 통관을 허용하는 시스템
아동 납치 피해자 식별 시스템	경찰이 수집한 실동 아동의 안면인식 DB와 납치가 의심되는 아동의 안면인식 정보를 비교하여 활용하는 시스템
시위 현장에서의 용의자 식별 시스템	폭동 등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의 사진과 범죄 현장이나 주변 지역에서 CCTV나 모바일 기기에 녹화된 인물의 사진과 비교하여 용의자를 식별하는 시스템
중대 범죄용의자에 대한 소급 수사 시스템	CCTV에 포착된 중대 범죄 용의자를 안면인식 기술로 식별하여 일치하는 범죄자 식별하는 시스템
원거리 안면인식 시스템	원거리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경찰이 보행자가 지나갈 때마다 안면인식을 통해 용의자를 감시하는 시스템
안면인식 DB생성	민간에서는 DB를 생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얼굴 이미지를 스크랩하여 안면 인식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

### III 시사점

- 국내에서는 안면인식 정보가 생체정보 보호 관점에서 민간·공공 모두 규제 대상으로 인식되는데 반해, EU에서는 기술의 특성에 유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
- 국내에서는 안면인식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생체정보로 인식하고 공공·민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공

#### 〈 국내 안면인식 기술 관련 규제 현황 〉

법령명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 국가기관·공공기관이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권장 사항에 따라 정책을 집행

#### 〈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생체정보 이용 권장사항 〉

#####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1. 법령상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확인
2. 생체인식정보가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점검 등을 통해 확인·관리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
4.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가능한 경우 생체인식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이행
5. 생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 내부 지침 등을 마련·운영

※ A기관은 지문관리체계에 국제표준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 인증)을 도입하여 지문관리 업무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임('20.11.)



**〈원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이용하는 경우〉**

1. 원본정보 유출시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분리보관을 필수로 적용
  2. 그 밖에 본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생체인식정보 보호 조치 이행
    - ※ ① 생체인식정보의 필요성 검토, ②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PbD) 적용, ③ 대체 수단 마련, ④ 위변조된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 ⑤ 생체인식정보 수집입력 단말에서 처리
- ⇒ 원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은 위의 보호 조치 이행을 위한 예산 반영 및 주기적인 확인점검을 통한 관리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출처 :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1.0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향후 국내 공공 부문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 부문 도입 시, 정부가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활용 전 단계(기획-활용-사후관리)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법집행에서 우려되는 권리 침해 사례 〉**

법집행	예상되는 권리 침해 상황
공공서비스 결제	결제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결제 당사자의 사적 재산으로 공공서비스 결제
용의자 식별	무고한 국민을 용의자로 오인

- 또한, 현재 공공·민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생체정보 보호 규제는 일선 업무담당자가 실제 활용하는데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EU와 같은 사례중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됨
- 국내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등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가 시행 중이므로, 「전자정부법」제18조의2제3항의 위임사항에 근거한 하위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전자정부법」 상 안면인식 기술 관련 조문 〉**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규칙」 채택

### I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EU 시민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산업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 연구, 기술개발 정책에 산업 잠재력을 활용하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규칙’을 채택 (2021.4.29.)<sup>2)</sup>

\* Regulation(EU) 2021/694 of establishing the Digital Europe Programme

- EU회원국 정상들은 2018년 탈린 디지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부흥, 기술 격차 해소, 글로벌 경쟁력 제고, 문화 다양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혁신 필요성에 합의
-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에 시행 중인 ‘EU공공행정 상호운용성 솔루션 및 공통 프레임워크에 대한 프로그램 수립 결정(2015/2240)\*’ 을 대체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지원 입법을 추진

\* Decision of the establishing a programme on interoperability solutions and common frameworks for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s, businesses and citizens as a means for modernising the public sector

### < 참고: EU 법 체계상의 규칙과 결정의 구분 >

	공통점	차이점
<b>규칙</b> (Regulation)	EU의 기관이 발령하는 법적 행위	회원국의 별도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EU기관의 의결만으로도 자동적으로 회원국 국내법의 일부가 되는 입법형식
<b>결정</b> (Decision)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채택하여 특정 회원국이나 개인에 대하여 발하고 구속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개별 입법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은 EU 시민과 민간기업에게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EU 최초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5개\*의 디지털 전환 목표를 설정함

\* I. 고성능 컴퓨팅, II. 인공지능, III. 사이버 보안 및 신뢰, IV. 고급 디지털 기술, V. 디지털 상호운용성의 배포 및 최선의 사용

<sup>2)</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1R0694&qid=1658714231012>

〈 목표별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주요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고성능 컴퓨팅	슈퍼컴퓨팅 관련 데이터 및 인프라 배포 운용
인공지능	인공지능 핵심 역량 지식 구축 지원, 네트워크 연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촉진,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및 신뢰	사이버 보안 장비, 도구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솔루션의 배포 및 비용 지원, 인식 확산, 사이버 보안 역량센터 규정 마련
고급 디지털 기술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상호운용성의 배포 및 최선의 사용	공공분야의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배포 및 유지 관리

II 주요 내용

- 본 규칙의 ‘Ⅴ. 디지털 상호운용성의 배포 및 최선의 사용’에서는 회원국이 각 국가의 공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배포·활용하도록 세부 목표와 이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명문화
  - EU 회원국들의 공공 기술 인프라 보급, 표준 마련, 민간 산업 육성 지원, 국가 간 공공 서비스 호환 및 국가 협력 지원,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 노력 등을 서술
  - 공공분야의 상호작용 편의성 증진, 행정서비스의 품질·효율성·투명성·신뢰성 제고, 공공 정보 재사용 장려, 디지털 약자를 위한 장벽 없는 디지털 접근성 촉진 및 개선 등 기대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규칙 제8조: 디지털 상호운용성 배포 및 최선의 사용 〉

**제1항 세부목표 5** - EU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면서 ‘디지털 상호운용성의 배포 및 최선의 사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a) EU는 EU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보건 및 의료, 교육, 사법, 세관, 교통, 이동성, 에너지, 환경, 문화 및 창조 분야와 같은 공공분야에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및 사이버 보안과 같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b) 유럽 전역에 걸쳐 국가별 지역별로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를 배포, 운영 및 유지 관리한다.
- (c) 공공분야에서의 중복비용을 줄이고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부문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와 유럽 디지털 표준 마련을 지원한다.

- (d) 공공분야에서의 오픈소스·상호운용성을 확보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포함한 프레임워크의 개발·업데이트·사용을 촉진한다.
- (e) 공공분야에서의 EU의 산업과 중소기업에서 디지털기술에 대한 실험 및 시범적용이 용이하게 하고,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기술의 사용을 확대한다.
- (f) 공공분야에서의 EU의 산업과 중소기업에서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과 같은 기타 첨단 및 미래 기술을 포함한 고급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지원한다.
- (g)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재사용되는 플랫폼으로 제공되어 상호운용 되도록 디지털 솔루션을 설계, 테스트, 구현, 배포 및 유지 관리하는 것을 지원한다.
- (h) UN차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관찰, 분석 및 적응하여 디지털 발전을 주도하고, 모범사례를 공유·주류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 (i)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하면서 사생활과 보안에 기반을 둔 유럽의 상호운용성과 표준 지원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내외부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사용에 대한 유럽 생태계 조성을 협력을 지원한다.
- (j)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제2항** 구체적 목표 5에 따른 조치는 주로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 부록은 이행지표와 후속조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지표를 마련

**〈 ‘V. 디지털 상호운용성의 배포 및 디지털 최선의 사용’ 목표 이행 지표 〉**

1. 디지털 공공서비스 도입 수
2. 디지털 집약도 높은 기업의 수
3. 국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와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의 일치 정도
4.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의 서비스를 사용한 기업 및 공공 부문 기관의 수

- 객관적으로 목표사항의 이행도를 점검하고 분야별(행정, 보건, 사법, 디지털 단일 시장 지원 조치 등)로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후속 조치를 마련

**〈 ‘V. 디지털 상호운용성의 배포 및 디지털 최선의 사용’의 후속조치 〉**

분야	주요 내용
사법	- 타 기관 및 관할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 AI 솔루션(법률기술 응용 프로그램) 도입으로 사법 정보 및 절차 접근성 개선 지원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정부에 대한 탈린 선언의 원칙을 구현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결 지원</li> <li>- EU 내의 공통 행정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설계, 시범 운영, 배포, 유지 관리, 진화 및 촉진 지원, 다국어 솔루션 촉진</li> <li>- EU 표준화 플랫폼을 통한 표준의 평가, 업데이트 홍보, 개발 등 지원</li> <li>- EU 국가 간 응용 프로그램 배포 촉진을 포함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유럽 생태계를 위한 협력 지원</li> </ul>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E- 헬스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를 완성하고 질병 예방, 건강 및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배포 지원</li> <li>- EU의 연구자와 질병의 예방,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li> <li>- 개인 건강정보의 제공을 통해 개인의 질병 치료에 디지털 기기 도입을 지원</li> </ul>
교통·에너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에너지·환경분야에서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분산형 솔루션 및 인프라 정책 지원 및 디지털화 지원</li> </ul>
교육·문화·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의 콘텐츠 창작자를 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 지원</li> <li>- 교육기관과 문화기관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li> </ul>
디지털 단일 시장 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 유럽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디지털 및 미디어 리더십 육성 및 마셜랜자 보호</li> <li>- 허위 정보 확산 감지 조치</li> <li>-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 설치</li> </ul>

○ 본 규칙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European Digital Innovation Hubs)’를 설치 규정

-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는 회원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신 디지털 기능과 기술 구현에 대한 단일 접점으로 개방형 혁신을 촉진
- 혁신 허브는 국가별 기관의 형태로 회원국의 행정, 제도, 구조 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되며, 향후 EU의 교부금을 받아 공공분야와 민간의 기술 진흥 및 지원의 역할 수행

###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규칙 제16조: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

**제1항**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의 초기 네트워크는 프로그램 구현 첫 해에 구축됩니다. 해당 초기 네트워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정 및 선택할 수 있는 특정 회원국에 후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회원국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허브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언급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별 절차와 제도 구조에 따라 후보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a) 제6항의 활동을 수행할 적절한 능력과 권한
- (b) 제6항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관리 능력, 인력, 및 기반 시설
- (c) UN 차원에서 규정된 행정, 및 재정 관리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운영 수단 및 법적 수단
- (d) 공권력에 의해 보증된 관리와 증명된 UN 기금의 수준에 상응하는 재정 실행 가능성

**제3항** 위원회는 법 시행이나 결정의 채택을 통해 초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관의 선정해야 한다. 시행법은 제 31조 제2항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된다. 위원회는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를 선택하기 전에 각 회원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언급된 기준과 다음 추가 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지정한 후보 기관 중에서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 (a) 초기 네트워크의 자금조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 (b) 산업 및 공익 분야의 요구사항을 보장하고 예를 디지털 격차 해소와 같이 통합기금(2021~2027)의 혜택을 받는 회원국 간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지리적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초기 네트워크의 필요성

**제4항** 공개 경쟁을 통해 위원회는 법 시행이나 결정의 채택을 통해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를 구성하는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법의 시행은 제 31조 제2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채택된다. 위원회는 추가적인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를 선택하기 전에 회원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유럽의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가 유럽 혁신 허브를 선택해야 한다. 네트워크 기관의 수는 회원국들의 허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UN의 최외곽 지역의 제약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기관을 지명하여 해당 지역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5항**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는 조직, 구성 및 작업 방법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자율성을 갖는다.

**제6항**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는 프로그램의 구현과 관련하여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의 중소기업 특히 EU 산업의 이익을 위해 다음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a) 디지털 혁신 전문 지식·노하우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테스트 및 시설 제공 또는 보장
- (b) 공공분야와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들이 신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모델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 (c)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를 통해 지역에 설립된 중소기업, 신생기업 및 중견기업과 타 지역에 제공되는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여 지역 간 전문 지식 및 노하우 이전과 공동 이니셔티브 및 모범사례의 교환을 장려한다.
- (d) 공공분야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주제별 서비스(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및 신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e) IV. 고급디지털 기술 목표에 따라 제3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의 목표별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모든 주제나 범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제7항** 유럽 디지털 프로그램에 따라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는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다.

### III 시사점

- 본 규칙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때 기술 도입에 필요한 공공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체계적인 EU의 지원 하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규칙」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신기술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및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적용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마련, 표준 설정, 프레임워크 구축 등 공공의 지원 내용 명문화
- 국내에서는 다양한 근거법을 토대로 분야별 거버넌스를 운영 중이나 전 부처를 아우르는 관점은 부족하므로 전 국가적 디지털전환 거버넌스 및 근거법 필요
  -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규칙’에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 설치를 법제화 하여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강력한 단일거버넌스 확보
  - 국내에서는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 분야별 거버넌스가 별도로 있고 이에 대한 근거법도 각각 산재

#### 〈 국내 디지털 전환 관련 거버넌스 설치 근거 〉

위원회	설치근거	근거 조문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b>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b> ①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둔다.
데이터 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b>제8조(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b> ②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 특별위원회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b>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b> 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둔다.

### 3

## EU 집행위원회, 고(高)가치 데이터셋 이행규정과 부록 내용 마련

### I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고가치 데이터셋의 목록과 출판 및 재사용을 위한 준비 이행 규정'<sup>3)</sup> 초안과 부록(데이터 형식 등)을 마련(2022.06.21.)

\* Regulation of laying down a list of specific high-value datasets and the arrangements for their publication and re-use

- 본 규정과 부록의 마련은 '데이터 공개 및 공공 부문 정보 재사용에 대한 지침'<sup>\*</sup>(이하 '지침')(2019.06.20.) 제5장 '고가치 데이터셋'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추진

\* 공개 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분야의 데이터 재사용을 규율하는 일련의 최소 규칙과 실질적 조치를 위해 2019년 6월 20일에 제정된 법률

- 지침에서는 고가치 데이터셋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종류와 조건 등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제별 데이터의 형식과 활용을 위한 준비 내용은 부록에 위임

○ 고가치 데이터셋은 6개분야(지리 공간, 지구관측 및 환경, 기상, 통계, 회사 및 회사 소유권, 이동)에 대한 데이터셋의 표준을 의미

- 공개 데이터 및 공공 부문 정보 재사용 위원회는 결정을 통해 공공이 보유하고, 민간에서의 상업적 잠재력을 가진 분야의 고가치 데이터셋을 공공의 문서로 채택

- EU 회원국들은 채택된 분야의 고가치 데이터셋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생성하고 Open API나 대량 다운로드로 제공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함

#### < 데이터 공개 및 공공 부문 정보 재사용에 대한 지침 제5장: 고가치 데이터셋 >

##### 제13조(고가치 데이터셋의 주제별 카테고리)

3)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111-Open-data-availability-of-public-datasets\\_en](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111-Open-data-availability-of-public-datasets_en)



**제1항** 고가치 데이터셋의 재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을 제공해야 하고, 그러한 주제별 데이터셋 카테고리 목록은 데이터셋 부록 1.에 서술한다.

**제2항**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의해 기술 및 시장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고가치 데이터셋의 새로운 주제를 추가할 수 있다.

#### **제14조(출판 및 재사용을 위한 특정 고가치 데이터셋 및 준비)**

**제1항** 위원회는 부록 1. 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고 이 지침이 적용되는 문서 중 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체가 보유하는 특정 고가치 데이터셋 목록을 규정하는 시행법을 채택해야 한다. 고가치 데이터셋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제3,4,5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 가능
- (b) 기계 판독 가능
- (c) API를 통한 제공
- (d) 해당되는 경우 대량 다운로드 제공

이러한 시행행위는 고가치 데이터셋의 출판 및 재사용을 위한 조치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개방형 표준 라이선스와 호환되어야 한다. 약정에는 재사용에 적용되는 용어,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형식, 보급을 위한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회원국의 공개 데이터 접근(특정 표준의 개발 및 롤아웃)에 대한 투자는 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시행법은 제16조 제2항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정 고가치 데이터셋의 식별은 다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 (a) 상당한 사회경제적 또는 환경적 혜택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
- (b) 많은 수의 사용자, 특히 중소기업 혜택 여부
- (c) 수익 창출 지원
- (d) 타 데이터셋과의 결합

위원회는 특정 고가치 데이터셋을 식별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협의와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문서의 재사용과 관련된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영향 평가에는 비용-편익 분석 및 공공기관의 예산에 영향을 끼치고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의 고가치 데이터셋을 무료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영향평가에서의 고가치 데이터셋은 경제 분야에서 경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a)호에서 고가치 데이터셋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는 공공의 특정 고가치 데이터셋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항** 제1항의 (a)호에 따라 고가치 데이터셋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은 대학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 보관소를 포함한 도서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항** 공공기관이 고가치 데이터셋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하면서 관련 기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관련 시행법의 발효 2년 후부터 고가치 데이터셋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기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II 주요 내용

- 본 이행 규정에는 고가치 데이터셋 목록 설정·게시 및 재사용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데이터셋의 배포 준비와 데이터 준비에 대해서 기술
  - 공공기관은 고가치 데이터셋을 배포하기 전 API 형태로 변환, 대량 다운로드화 가능, 연락 창구 지정, 메타데이터 설명에 고가치 데이터셋 표기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함

### 〈 이행규정 제3조(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가치 데이터셋의 배포 준비) 〉

**제1항** 부록에 나열된 고가치 데이터셋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은 부록에 설명되거나 참조된 데이터셋이 API를 통해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부록에 명시된 경우 데이터셋은 대량 다운로드로도 제공된다.

**제2항** 제1항에 언급된 공공기관은 API의 성능, 용량 및 가용성에 대한 서비스 품질 기준과 API 사용 조건을 설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이용약관은 사람이 읽을 수 있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 조건과 서비스 품질 기준은 모두 제4조에 규정된 고가치 데이터셋의 재사용을 위한 약정과 양립해야 한다.

**제3항** API 이용약관에는 EU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공개된 사람이 읽을 수 있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의 API 문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언급된 공공기관은 API의 가용성 및 유지 관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가치 데이터셋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계산을 보장하기 위해 API와 관련된 질문 및 문제에 대한 연락 창구를 지정해야 한다.

**제5항** 부록에 나열된 고가치 데이터셋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은 데이터셋이 메타데이터 설명에서 고가치 데이터셋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배포된 고가치 데이터셋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라이선스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비롯한 재사용 조건 등 제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 〈 이행규정 제4조(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가치 데이터셋의 재사용 준비) 〉

### 제4조(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가치 데이터셋의 재사용 준비)

**제1항** 지침 제14조제5항에 따라 면제를 부여하기로 한 회원국의 결정은 언급된 공공부문 기관 목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된 즉시 온라인으로 게시되어야 하고 지침 제6조제3항을 준수한다.

**제2항** 이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의무는 장기간 재사용으로 데이터셋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규정의 적용이 이전에 생성된 기존의 고가치 데이터셋에도 적용한다.

**제3항** 고가치 데이터셋은 명시된 대로 Creative Commons By 4.0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Public Domain Dedication(CCO) 라이선스 또는 동등하거나 덜 제한적인 오픈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부록에서 저작자 표시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무제한 재사용을 허용하고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한다.

**제4항** 부록에 나열된 고가치 데이터셋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은 특정 고가치 데이터셋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 보호 등과 같은 개인 데이터 재사용에 대한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5항** 부록에 나열된 고가치 데이터셋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은 데이터셋이 메타데이터 설명에서 고가치 데이터셋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 부록에서는 6가지 주제별 ‘고가치 데이터셋’의 핵심 요건을 구체화하여 동일 분야에서 생성되는 고가치 데이터셋은 동일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함
  - ‘범위 내 데이터셋’에서는 분야별 고가치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주요 속성을 명시하고, 데이터의 단위 등 규격을 확정
  - ‘출판 및 재사용을 위한 준비’에서는 고가치 데이터셋의 디지털 형식, 최신의 정보로 갱신되어야 하는 빈도 등을 확정하여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열거

## 〈 예시 : 기상분야 고가치 데이터셋 〉

### 3.1 범위 내 데이터셋

기상 주제 범주에는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관측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셋, 검증된 관측(기후 데이터), 기상 경보, 레이더 데이터 및 아래 표에 나열된 세분성 및 주요 속성을 가진 수치 기상 예측 모델 데이터가 포함된다.

데이터셋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관측데이터	유효하게 관찰된 기후 데이터	날씨 알림	레이더 데이터	NWP 모델데이터
단위	기상 관측소별 한번에 처리가능한 양	기상 관측소별 한번에 처리가능한 양	알림, 48시간 전후	MS 및 국가 단위의 레이더 스테이션의 수	최적의 그리드 (2.5km)에서 최소 48시간 (1시간 전후)
주요 속성	모든 측정된 변수	모든 유효하게 측정된 변수: 변수당 일일 평균		반사율, 후방산란, 편광 강수, 풍속, 예보값	결정론적 또는 가능한 경우 앙상블, 기상 관련 매개변수 및 수준

### 3.2 출판 및 재사용을 위한 준비

- a) 데이터셋은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 Creative Commons By 4.0 라이선스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덜 제한적인 오픈 라이선스 조건
  - 아래 표에 명시된 형식 또는 다른 연합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개,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
  - API 및 대량 다운로드 가능
  - 아래 표에 명시된 업데이트 빈도 및 적시성 준수
- b) 데이터셋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는 완전하고 널리 사용되는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웹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 c) 데이터셋은 최소한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완전하고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온라인 문서로 설명되어야 한다.

데이터셋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관측데이터	유효하게 관찰된 기후 데이터	날씨 알림	레이더 데이터	NWP 모델데이터
형식	BUFR, NetCDF, ASCII(실시간 데이터 용)	NetCDF, JSON	XML(캡 또는 RSS/원자)	HDF5, JSON	GRIB(또는 NetCDF), JSON
업데이트 빈도 및 적시성	실시간으로 5-10분마다 관측되는, 24시간 동안의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매일 시간당 유효하고 매일 평균적으로 관찰되는 데이터	발령된 또는 시간별 알림	실시간 5분 간격 (또는 사용가능한 가장 짧은 간격)	매 6시간 또는 지난 24시간 동안 한번에 처리가능한 정도

### III 시사점

- EU의 집행위원회는 해당 입법으로, 회원국의 공공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고가치 데이터셋을 민간에서 쓸 수 있도록 체계적 표준 절차 구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규정과 부록은 고가치 데이터셋의 구조와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조건을 구체화하여, 향후 수요가 많은 AI의 학습용 데이터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에서도 EU의 경우와 같이 지리 공간, 지구관측 및 환경, 기상, 통계, 회사 및 회사 소유권, 이동 등 국내 기업 환경에 유의미한 고가치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표준 제정 필요
  - 국내에서는 EU의 이행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을 정하고, 표준 데이터셋 제공항목 및 속성을 공개함
    - ※ 2022.4월 기준 147개의 공공데이터 제공표준을 공개
  - 국가가 공개하는 147개의 데이터의 표준은 전국 주차장 정보, 휴양림 정보, 생활쓰레기 정보 등 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데이터가 주를 이룸

#### 〈 예시 : 버스정류장에 대한 표준데이터셋 제공항목 및 속성 〉

##### □ 기본정보

항목	제공범위(대상)	관련법령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갱신주기
내용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의 버스정류소 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대중교통 정보센터 (tago.go.kr)	연간

##### □ 상세정보

NC	항목명	구분	설명	표현형식/단위
1	정류소ID	...	...	...
2	정류소명	...	...	...
3	정류소번호	...	...	...
4	위도	...	...	...
5	경도	...	...	...

## 4

## 독일 바이에른 주(州), 「디지털법」 제정

### I 개요

○ 독일 바이에른 주(州) 정부는 바이에른 시민과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디지털화를 설계하고 촉진하는 ‘디지털법’<sup>\*</sup> 본회의 통과(2022.07.20.)<sup>4)</sup>

\* Gesetzentwurf der Staatsregierung über die Digitalisierung im Freistaat Bayern (Bayerisches Digitalgesetz - BayDiG

- 디지털법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전자정부법의 ‘행정의 전자화’ 내용에 EU의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권리를 덧붙여 ‘주(州) 정부의 디지털화’를 명문화

### 〈 바이에른 주 디지털법 제2조: 디지털화 추진 〉

**제1항** 바이에른 자유주는 시민, 사회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디지털화를 설계하고 촉진한다.

**제2항** 바이에른 자유국이 취한 조치는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주는 시민, 사회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디지털화를 설계하고 촉진한다.

1. 바이에른의 디지털 기술 홍보
2. 디지털 교육 확대 및 심화
3. 효율적인 디지털 서비스 홍보
4.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5. 건강 관리의 디지털화
6. 과학의 디지털화
7. 사회, 기업, 행정의 디지털 기초 능력 강화
8. 디지털 소비자 보호
9.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홍보
10. 디지털의 평등한 접근 촉진
11. 국가 행정 및 기업의 IT 보안 강화
12. 행정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확장
13. 디지털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단순화 및 사용친화적 설계
14. 공공데이터 제공
15.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접근성 확대

<sup>4)</sup> <https://www.stmd.bayern.de/service/gesetz-und-verordnungsentwuerfe/>

## II 주요 내용

- 디지털법은 전자정부법의 일부를 포함한 ‘일반규정’과 디지털화의 개념을 추가한 ‘디지털 관리’, ‘보안’, ‘조직’, ‘경과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장을 구성
- 디지털법 ‘제1장 일반규정’은 디지털정부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바이에른 주민의 디지털 주권 개념 중심으로 조문 중심 서술
  - 제1장에는 디지털 정부 추진에 필요한 ‘공개 데이터 접근’, ‘디지털 파일 관리’, ‘디지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원칙 등 명시

### 〈 바이에른 주 디지털법 제1장 주요 기본원칙 〉

기본원칙	주요내용
공개 데이터 접근	정부는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준비해야 함
디지털 파일 관리	디지털 파일의 무결성 진정성, 기밀성을 추구해야 함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정부는 행정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정부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모바일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One-Only)	개인과 기업 정보가 한 번 제출되면 다시 요구하지 않아야 함

- 더불어 인터넷 무료 이용권, 디지털 신원에 대한 권리, 디지털 관리에 대한 권리 등 바이에른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권리를 기술

### 〈 바이에른 주 디지털법 주요 권리 〉

권리	해당 조문
인터넷 무료 이용권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무료로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제8조)
디지털 신원에 대한 권리	모든 자연인은 동 조에 따라 자신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11조제1항)
디지털 관리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제16~18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정부와 디지털 방식으로 통신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동 조에 따라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 ‘제2장 디지털 관리’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결제, 거래, 행정절차, 바이에른 포털의 운영, 디지털 파일의 관리,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협력에 대한 내용 규정

**〈 바이에른 주 디지털법 제19조: 디지털 프로세스 〉**

<p><b>제1항</b> 정부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디지털 형식으로 적절한 행정 절차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p> <p><b>제2항</b>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공식 양식은 인터넷에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법 규정으로 인해 서명을 제공하는 특정 양식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그 이유만으로 서면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p> <p><b>제3항</b>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법 또는 기타 이유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디지털 행정절차에서 신원의 디지털 증명을 통해 신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Personal Ausweisgesetz(PAuswG)의 제18조</li> <li>2. 거주법(AufenthG)의 제78조제5항</li> <li>3. eID카드법(eIDKG) 제12조</li> <li>4. 중앙 정부법이나 주 정부법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안전한 방법에 의해 식별 또는 인증의 일반적인 수단 또는 서면 형식을 대체하는 경우</li> </ol>
--

- 이후 2022.05.20. 중소기업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법 초안 제14조에 데이터 수탁자(민간기업)의 임명내용을 신설하여 수정을 진행

**〈 바이에른 주 디지털법 제14조: 데이터 공개 〉**

〈초안〉	〈변경 후〉
<p><b>제1항</b> 공공행정의 개방형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성을 보장한다.</p> <p><b>제2항</b> 국가는 대상그룹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p> <p><b>제3항</b> 자세한 사항은 법률 또는 법률에 의거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1항</b> 공공행정의 개방형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성을 보장한다. 정부는 대상그룹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p> <p><b>제2항</b> 정부는 데이터 기반 관리를 위해 기존 데이터를 결합하여 시민과 기업을 위한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p> <p><b>제3항</b> 자세한 사항은 법률 또는 법률에 의거하는 바에 따른다.</p>



〈 참고 : 디지털법의 조문 구성 〉

일반규정	디지털화 및 디지털 기술 진흥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디지털화 추진
		제3조 디지털 의사결정 능력
		제4조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제공
		제5조 국가 및 행정의 디지털화
		제6조 지속가능한 디지털화
		제7조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함양
	디지털 권리 보증	제8조 인터넷의 무료 이용 제공
		제9조 디지털 행위능력
		제10조 디지털 자기 결정권
		제11조 디지털 신원 서비스
		제12조 디지털 관리의 권리
		제13조 모바일 서비스
		제14조 데이터 공개
		제15조 디지털 계획 및 보고
디지털 관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	제16조 디지털 문서 전송
		제17조 디지털 서비스
		제18조 디지털 지불 및 송장
	디지털 행정 프로세스	제19조 디지털 프로세스
		제20조 디지털 프로세스 표준
		제21조 디지털 행정서비스 분야의 민간협력
		제22조 디지털 행정 절차에서의 동의
		제23조 증거 및 문서의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 및 정보 검색
		제24조 포털을 위한 공지
		제25조 포털을 통한 디지털 문서 전송
	바이에른 포털 협회	제26조 바이에른 포털 협회
		제27조 바이에른 포털을 통한 대국민 행정
		제28조 바이에른 포털을 통한 기관 간 행정
		제29조 사용자 계정 및 사서함
		제30조 사용자 계정의 기능 및 데이터 보호

		제31조 사용자 계정의 식별 및 서면 대체
		제32조 포털 내 데이터 처리 근거
	디지털 파일 및 레지스터	제33조 디지털 파일
		제34조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접근
		제35조 디지털 등록부
	데이터 센터 간 협력	제36조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규제 협력
		제37조 기본중앙서비스 관리 인프라
		제38조 국가계약에서의 정보처리
		제39조 바이에른 서버
보안	일반규정	제41조 정보기술 보안국
		제42조 정보기술 보안 책임
		제43조 기관간 의무
	권한	제44조 정보기술에 대한 위협 방어
		제45조 정보기술의 보안조사
		제46조 최소 기준
		제47조 보안 경고
	개인정보 보호	제48조 데이터 보관 및 평가
		제49조 데이터 이동
	조직	
		제51조 표준화 결정
경과규정		제52조 실험 조항
		제53조 조례 승인
		제53조의a 기타 법률 변경
		제53조의b 바이에른 디지털법 개정
		제54조 기본권의 제항
		제55조 시행

### III 시사점

- 바이에른 주(州)는 디지털법 제정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전자정부 정책과 디지털정부 바이에른주의 디지털화 가속화하는 근거로 삼음
  - 주 정부는 디지털법 시행으로 연간 6억 유로의 직접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은 편리한 행정서비스 사용과 디지털 권리 신장 예상
- 국내에서도 바이에른 주와 같이 「전자정부법」의 원칙을 토대로, 국민들의 디지털 권리를 실현하고 디지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
  - 현재는 디지털 전환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 「전자정부법」의 일부개정만을 토대로 디지털정부 정책을 추진 중
    - ※ 2010년 전부개정 이후 총 6회의 일부개정 시행

#### 〈 참고: 「전자정부법」의 주요 개정연혁 〉

시기	입법형태	입법 사유
2001년	제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7년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개정(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관리 및 정보화 책임관협의회 운영)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 규정
2010년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 규정 및 체계의 전면 재구성
2013년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개정(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14년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개정(데이터 활용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관련)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6년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개정(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시 정보시스템 감리 생략)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7년	일부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2021년	일부개정	본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국가준데이터 지정,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민간 서비스 활용 확대, 정보자원 통합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근거 마련 등
2022년	일부개정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에 따른 체계 정비 및 용어 변경